

[별지 제16호서식] <개정 2003.1.2, 2006.6.9>

제 호

## PERMIT FOR TEMPORARY PLATES

※표기란은 기재하지 않습니다.

Applicant	Name		SSN	
	Unit Address			
Operator	Name		SSN	
	Unit Address		(Cell Phone: )	
	Vehicle Type		Make, Model	
Details	VIN No.			
	Purpose	Shipping in / Shipping out		
	Period	10days		

자동차관리법 제27조1항·동법시행령 제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

Date 20 . . .

Name & Signature

※구비서류 : 없음

신청안내

신청하는 곳	시·도 또는 시·군·구	처리기간	Fee
		즉시	1,800WON

○운행목적별 임시운행의 허가기간(시행령 제7조제2항)은 아래와 같습니다.  
 -신규등록신청·차대번호 표기 또는 전시 등을 위한 운행 : 10일  
 -수출을 위한 운행 : 20일  
 -자기인증에 필요한 시험 또는 확인을 위한 운행 : 40일  
 -제작자등의 연구·개발목적의 운행 : 2년 이내

○임시운행허가기간이 만료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교부한 관청에 반납하여야 합니다. 다만, 신규등록을 시신청하는 경우에는 임시운행허가기간내에 신규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반납하여야 합니다.

-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반납기간내에 반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.

210mm×297mm